

업무 방침:

중요 범죄

업무 방침 코드:

HAT 1

발효일:

2025 년 1 월 31 일

Cross-references:

[ALT 1](#) [CHA 1](#) [CON 1](#)
[LEG 1](#) [VIC 1](#) [VUL 1](#)
[YOU 1.4](#)

중요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위협하여 분열과 불화를 야기한다. 중요 범죄가 초래하는 피해는 물리적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고 누적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영향은 표적이 된 개인과 표적이 된 집단의 다른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파급된다.¹

중요는 소외된 공동체가 불균형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교차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즉,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 차별받을 수 있는 여러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중요 경험이 불균형적이다.²

중요 범죄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개인과 집단의 안전에 대한 취약성 및 두려움 증가
- 자존감, 포용심, 소속감 침식
- 표적이 된 사람들의 언어 및 자기표현 위축

중요 범죄

형법에서는 "중요 범죄(hate crim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업무 방침의 목적상 중요 범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집단 학살 옹호 또는 조장(제318조)
- 중요를 부추기는 대중 선동(제319조 (1)항)

1 *R v Keegstra*, [1990] 3 SCR 697 at paras 60-63

2 BC Human Rights Commission, “From hate to hope: Report of the Inquiry into hate in the COVID-19 pandemic” (2023), page 9

- 고의적인 증오 조장(제319조 (2)항)
- 고의적인 반유대주의 조장(제319조 (2.1)항)
- 전환 치료와 관련한 범죄(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의 억압, 축소 또는 변경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구하는 범죄)
 - 전환 치료를 받게 함(제320.102조)
 - 전환 치료를 받게 할 의도로 아동을 캐나다 밖으로 데려감(제273.3조 (1)(c)항)
 - 전환 치료 홍보 또는 광고(제320.103조)
 - 전환 치료 제공으로 물질적 혜택을 받음(제320.104조)
- 편향이나 편견, 증오가 동기가 되어 구별되는 집단의 재산에 끼친 위해(제430조 (4.1)항)
-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기타 유사한 요인에 근거한 편향이나 편견, 증오가 동기가 된 **형법상 모든 범죄**(제718.2조 (a)(i)항)로, 범죄 중에서도 폭행이나 범죄성 괴롭힘, 위협 발언, 기물 손괴를 포함할 수 있음

형법은 “구별되는 집단(identifiable group)”을 피부색이나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구별되는 모든 대중 계층으로 정의한다(제318조 (4)항).

역사적으로, 증오 범죄 조항은 구별되는 모든 집단, 특히 성별이나³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원주민성(Indigeneity)을 이유로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대등한 정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검사는 위에 기재된 구별되는 집단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구별되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증오 범죄 조항 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 - 수사 단계

증오 범죄 수사에 관한 조언은 검사가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LEG 1)). 수사 기관이나 검사와 상의할 때 증오 범죄 리소스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혐의 평가

일부 증오 범죄 기소(및 관련 영장 신청)에는 법무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예: 집단 학살 옹호

3 R v Sears, 2021 ONCA 522, denying leave from 2021 ONSC 4272, affirming 2019 ONCJ 104

또는 조장, 고의적인 증오 조장, 고의적인 반유대주의 조장(법무 장관의 동의(CON 1)).

명백한 편향이나 편견, 증오의 표현은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일반 대중에게 증오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증오 사건이 형법상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증오 행위가 형법상 범죄 수준에 이르는 경우, BC 소추 서비스부(BC Prosecution Service)가 *혐의 평가 지침(Charge Assessment Guidelines)*([CHA 1](#)) 업무 방침의 혐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Crown Counsel)를 수사 기관에서 접수하면 형사 기소가 개시될 수 있다.

캐나다에는 원주민, 아시아인, 흑인, 그 외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 및 종교, 성,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는 길고 유감스러운 역사가 있다. 일부 수사관과 검사는 인종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특정 언어가 그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이나 영향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런 언어를 전하거나 그 의미와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검사는 혐의 평가를 수행할 때 경찰이 이의가 제기된 모든 증오 행동과 언사를 충분히 상술했는지 또한 그런 행동과 언사의 성격 및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맥락을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718.2조 (a)(i)항에 포함된 가중 양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추가 수사를 요청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증오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모두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에게 보내 배정을 받아야 한다.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은 혐의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증오 범죄 리소스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CHA 1](#)).

공익은 일반적으로 증오 범죄에 대한 기소를 선호하며, 특히 해당 사건이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선호한다.

-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
- 해당 피해자의 공동체에 가해진 피해
- 피해자의 상대적 취약성
- 해당 범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

공익을 평가할 때 검사는 피고인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청년이거나, 정신 질환 또는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구별되는 집단(추정되는 피해자와 같거나 다른 집단)에 속하여 있다는 증거는 관련 있는 공익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증오 범죄 혐의를 승인하는 검사는 언론의 관련 문의에 응답할 공보 담당 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편향이나 편견, 증오에 의한 동기

제 718.2조 (a)(i)항의 요인을 근거로 범죄의 동기가 편향이나 편견, 증오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거를 제출하고, 제718.2조 (a)(i)항에 따른 판결을 추구하며, 가중 정황을 다루는 양형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의상, 모든 중요 선전물과 전환 치료 범죄 및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편견, 증오를 동기로 하는 기물 손괴 범죄는 제718.2조 (a)(i)항에 따른 가중 정황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검사는 이 같은 범죄의 가중 정황을 다루는 양형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⁴

기소 대안

검사는 중요 범죄를 대안 조치나 재판 외 조치를 위하여 회부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소 대안- 성인(Alternatives to Prosecutions – Adults)*)([ALT 1](#)), *소년 사법- 재판 외 조치(Youth Criminal Justice Act – Extrajudicial Measures)*)([YOU 1.4](#)). 중요 범죄에 대한 기소 대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승인되어야 한다.

- 구분되는 개인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의 소원이 고려됨
- 피고인에게 관련 범죄나 폭력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혐의 범죄의 근거가 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 피고인이 표적이 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지속적인 위협이 없음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와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Victims of Crime)*)([VIC 1](#)) 및 *취약한 피해자와 증인(Vulnerable Victims and Witnesses)*)([VUL 1](#)) 업무 방침에 따라 혐의 선고 전에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여야 한다(제722조).

개인이 공동체를 대신하여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722.2조).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는 구별되는 집단 전체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선고 판사의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⁴ *R v Sears*, 2021 ONCA 522 at para 41; *R v Bethune and Seveve*, 2022 BCPC 243

원주민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수많은 정부 위원회와 보고서는 원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공공연한 인종 차별주의적 태도의 결과이든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관행의 결과이든 형사 사법 제도의 모든 부분에까지 뻗쳐 있음을 인정했다.

캐나다에서 자행된 식민주의, 강제 이주, 기숙 학교의 역사는 원주민의 상대적인 저학력, 저소득, 높은 실업률, 높은 약물 사용률과 자살률, 높은 수감률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원주민 피해율도 특히 원주민 여성과 소녀의 경우는 비원주민 여성과 소녀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⁵

캐나다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식민주의 잔재의 결과가 원주민 피고인이 연루된 모든 사안의 저변에 여전히 깔려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원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고유의 제도적 및 배경적 요인과 더불어 원주민의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⁶

원주민 피해자, 집단, 공동체에 대한 증오 범죄 등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검사는 혐의 평가 및 해결과 양형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우리 사회에서 원주민에게, 특히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일어나는 폭력과 증오 문제의 심각성 및 그들이 직면해 온 심각한 불공정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⁷

또한, 검사는 원주민이자 여성임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취약한 사람이 학대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저지라는 목적을 일차적으로 반드시 숙고하게 하고 있음을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제718.04조).

5 *Victimization of Aboriginal People in Canada, 2014*, Statistics Canada, 2016

6 *Ewert v Canada*, 2018 SCC 30 at paras 57 and 58;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s 198-200; also [BC First Nations Justice Strategy](#), February 2020

7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 198